

부산고등법원 2019. 2. 20 선고 2018나55244(본소), 2018나58618(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청구의 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19. 2. 20 선고 2018나55244(본소), 2018나58618(반소)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가합45267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영일

피고, 항소인1. C 유한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2. I

3. J

4. K

5. L

피고(반소원고) 2 내지 5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표

변론 종결2019. 1. 16.

판결 선고2019. 2. 20.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가합45267 판결

주 문

1. 피고 C 유한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I, J, K, L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C 유한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C 유한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I, J, K, L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과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 I, J, K, L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본소

가. M에게,

(1) 피고 C 유한회사는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7. 11. 19. 접수 제336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J, K, L는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7. 21. 접수 제202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7. 21. 접수 제202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3)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I는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7. 28. 접수 제209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C 유한회사는 N, M에게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11. 19. 접수 제336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I, J, K, L의 반소

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1) 피고 I에게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J, K, L에게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I, J, K, L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피고들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11쪽 18째 줄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J, K, L는 "이 사건 4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위 피고들이 승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제1심판결문 11쪽 20째 줄 끝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I, J, K, L는 "이 사건 4,5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이상 위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 자체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매매대금 지급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옳지 않다.』

다. 제1심판결문 11쪽 20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I, J, K, L는 이 사건 4,5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주위적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이 이 사건 4, 5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옳지 않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I, J, K, L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4, 5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에게 지급한 230,000,000원은 원고가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 되므로, 원고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4, 5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원고가 위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위 피고들 주장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민법 제548조 제1항 참조)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행하더라도, 위 피고들에게 위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위 피고들은 자신들이 위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갖고 있다거나 이와 같은 해제권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옳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한편, 피고 I, J, K, L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심담

판사이혁

판사심활섭

별지

1) 피고 I, J, K, L는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